

1. 주요내용

< 유럽 그린딜과 탄소국경조정 (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팀장) >

□ 유럽 그린딜

- 기후 대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EU 역내 제품(기술) 경쟁력 강화, 고용 창출 등 경제 전반의 지속가능 전환을 목표로 하는 종합계획
- 유럽연합집행위(EC)는 유럽 그린딜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(EGDIP: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) 및 공정전환 메커니즘(JTM: Just Transition Mechanism) 발표('20.1)
- * EU 자체 예산과 그린딜 참여 공공 및 개별 주체의 투자로 조성(향후 10년간 약 1조 유로 이상)

□ 유럽 기후변화법(European Climate Law)

- EC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등 기후중립 목표를 포함하는 유럽기후변화법 초안 발표('20.3)
- 회원국 및 관련 기구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(legally binding)을 가짐(이행상황 검토 및 기후행동 조정 수단 포함)

구 분	주요 내용
2050년 감축목표	- 2050년 탄소중립 달성
2030년 감축목표	- 2030년 감축목표 50~55% 상향 검토('20.9) - 2030~50년 감축경로 제안
감축이행 평가	- '23.9월(이후 매5년)까지 탄소중립, '30~'50년 감축경로 부합평가 - 중립목표 미달 회원국에 권고안 제시
기후적응 및 복원력	- 복원력 강화, 적응전략 개발
탄소 국경조정 추진	- 국가 간 탄소규제 차이 축소, 탄소누출 방지

□ 신산업 전략(New Industrial Strategy)

- EC는 유럽 그린딜 부문별 전략 일환으로 EU 新산업 전략 발표('20.3.20), 산업 부문 녹색 전환 및 디지털 전환을 양대 축으로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 제시
- 산업 부문 녹색 전환, 디지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①신 산업 육성, ②중공업 탈탄소 지원 및 ③글로벌 경쟁으로부터 역내 산업 보호 등이 산업 전략 핵심

□ 탄소국경조정(Carbon Border Adjustment)

- (개념)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가 간 감축의욕(ambition) 차이를 보정하는 무역 제한 조치를 의미, 다양한 형태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국경세(carbon border tax)보다 광의의 의미로 해석됨
 - 유럽에서는 ' 20년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' 21년 2분기 유럽연합 집행위(EC)에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안을 검토 중
- (배경) 강한 온실가스 규제가 도입된 국가에 위치한 기업은 외국 경쟁업체에 비하여 생산비용이 상승하여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, 국내 업체가 규제가 없는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혹은 경쟁국가의 생산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존재(탄소누출)
 - * 탄소누출(Carbon Leakage) :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의 탄소 감축정책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원이 역외로 이탈하는 현상
- (쟁점 사항) 탄소 국경조정이 WTO 협정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규정 필요
 - ① GATT 제20조(환경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)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수출국 온실가스 정책에 비례하는 차등적인 국경조치가 필요
 - ②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경우 원산지 결정이 어렵고, 제조공정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추적이 매우 복잡함
 - ③ EU는 기후변화 해결을 목표로 설계하는 탄소국경조정이 외국 제품에 대해 무차별하며(non-discriminatory), 투명하게(transparent) 운영된다면 원칙적으로 WTO 협정문과 합치한다는 입장
- (방식)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의 법적(WTO 협정, EU의 무역협정 등 합치) 및 기술적 실행가능성(내부 탄소가격(EU ETS)와 상보성) 대해 면밀히 평가 계획
 - (조정 옵션) ①특정 품목에 대한 탄소세(국내, 수입산 모두), ②신규 탄소관세, ③EU ETS를 수입품으로 확장
 - (적용 범위) 탄소누출의 위험이 가장 큰 부문부터 우선 적용 후 범위확대가 예상되며, EU ETS 3기와 4기의 탄소누출의 위험을 분석하는 연구를 시행할 계획

- (조정 방법) 탄소 국경조정 시행을 위해 수입품의 탄소 함량이나 적용 탄소가격 수준에 대해 평가 필요(現 EU ETS에서는 산업부문 공정에 대해 벤치마크 체계가 마련됨)

□ 한국 영향

- 온실가스 순수출국으로 탄소국경조정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
 - 제조업이 가장 직접적으로 탄소국경조정 영향에 노출되며, 제조업 중 EU 탄소국경조정에 노출된 부문은 수송 장비, 전자 장비 순

(단위: CO₂ 백만 톤)

구분	EU		한국	
	對세계	對한국	對세계	對EU
농림어업	-5.4	0.1	-2.6	-0.1
광산업	-157.9	0.7	-34.8	-0.7
전력, 가스, 물 공급/처리	-1.2	0.2	-1.7	-0.2
서비스	-29.7	1.9	8.0	-1.9
제조업	-308.1	-12.7	79.3	12.7
화학 및 비금속	-76.5	-0.8	4.5	0.8
금속	-38.5	-0.7	11.4	0.7
컴퓨터 및 전자, 전기 장비	-98.5	-2.5	27.1	2.5
수송 장비(자동차/기타 수송)	0.1	-9.7	42.6	9.7

- 국내는 '15년 기준 최소 5유로 이상의 탄소가격을 이미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, 배출권거래제 이행으로 유효탄소가격은* 지속 상승 예상
 - 향후 탄소가격공백은 최소 30유로의 유효탄소가격 기준으로 추가적 탄소가격 부여가 필요하며, 현재 격차는 43% 수준으로 유럽 주요국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석됨('15년 기준)

*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에 적용되는 총 가격으로 세금(탄소세, 종량세 등)과 배출권 가격의 합으로 구성

< 녹색금융 ISO표준화 동향 안내 및 업계 의견수렴 (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요한 박사) >

□ 녹색금융과 분류체계(Taxonom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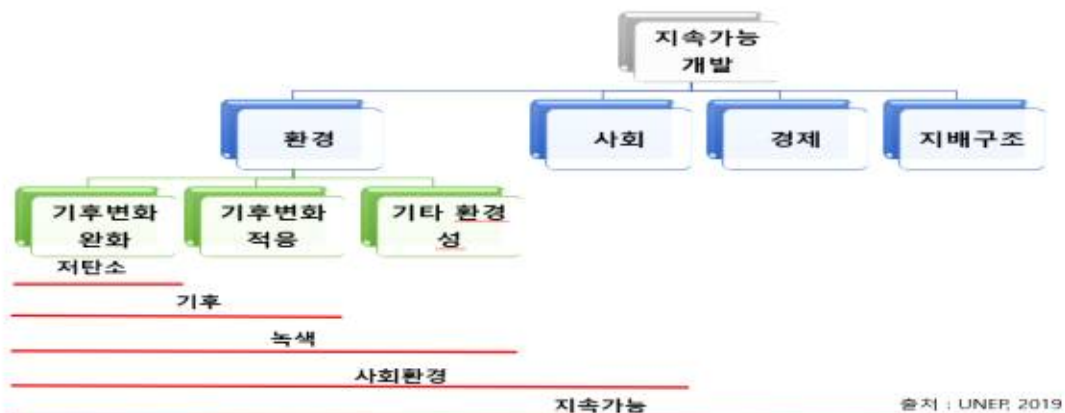
- (녹색금융) 친환경적인 산업에 금융비용을 줄여 주는 등 금융조달 활성화 지원을 지원하고, 친환경적이지 못한 산업에 금융비용을 가중하거나 금융조달을 어렵게(예, 탈석탄금융, 탈원전금융 등)하는 것을 골자로 함
- (분류체계) 녹색금융 방식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 선정 시 어떤 산업이 친환경적인지 판단하는 기준

□ 국제표준화 추진현황

- 중국 주도로 녹색금융(Green Finance)을 국제표준화기구(ISO)에 既 제안, 현재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진행

녹색금융 관련 표준 아이템	표준번호	표준화작업반	주도국가	시작시기, 현재 단계 (총 6단계)
녹색금융	ISO 14100	ISO/TC207/WG11 -> ISO/TC207/SC4 이동	중국	'18.6, WD(2단계)
기후변화 투자/금융	ISO 14097	ISO/TC207/SC7/WG10	프랑스	'17.7, DIS(4단계, 투표중) 7.28 마감
녹색용자도구-녹색채권	ISO 14030-1	ISO/TC207/SC4/WG7	미국	'17.7, DIS(4단계, 투표중) 7.1 마감
녹색용자도구-녹색대출	ISO 14030-2	ISO/TC207/SC4/WG7	미국	'18.6, CD(3단계, 투표완료)
녹색용자도구-분류체계	ISO 14030-3	ISO/TC207/SC4/WG7	미국	'18.6, DIS(4단계, 투표전)
녹색용자도구 검증	ISO 14030-4	ISO/TC207/SC4/WG7	미국	'18.6, CD(4단계, 투표중) 7.29
지속가능금융	ISO 32210	ISO/TC322	영국	'19.10, NP(1단계)

- 녹색금융, 지속가능 금융, 기후 금융 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,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예상



□ 향후 대응

- 국내 산업 영향 검토, 산업별 국내 영향 확인, 대응 전략 확정 예정
- 국내 산업별 분류체계 수립 추진(안)
 - ①-① 국제표준화 저지 전략(가능성 低) : 반대 회원국 규합하여 표준 투표 부결을 유도할 수 있으나, EU 회원국 다수 찬성으로 쉽지 않음
 - ①-② 국제표준화 지연 전략(가능성 有) : 반대 회원국 규합하여 표준 통과 기준(2/3 찬성, 반대 1/4이하) 미달 연계전략은?
 - ② 국제표준에 한국기준 반영 : EU 기준은 ANEXX B에 포함되어 있으며, 국가 및 지역별 기준 사용 권고함에 따라 국내 관련 기준을 이용하여 분류체계를 신속히 제정하고 추후 점진적으로 개정(동시에 국제표준 개정 시 반영)
- 다른 국가와 연계(일본 등) 일본과 정기적으로 준비상황 공유, 공동으로 기타 회원국에 동향 공유 및 지지 요청